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87
----------	------

발의연월일 : 2021. 1. 11.

발 의 자 : 배진교 · 강은미 · 류호정
심상정 · 이은주 · 장혜영
강민정 · 양정숙 · 허종식
이규민 · 조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오래된 경제개혁 과제이기도 함.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스스로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음.

이에 경성담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여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주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129조제1항 삭제).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p> <p>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u>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p> <p>② ~ 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p> <p>제129조(고발) <삭제></p> <p>② ~ ⑥ (현행과 같음)</p>